



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
수신자 : 각 시·도조합이사장

(경 유)

제 목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자료 요청

1.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-4147(2023.06.26.)과 관련입니다.

2.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일부개정법률안('22.05.18, 의안번호 15645,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)이 국회 입법발의 된 바 있습니다.

3.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업종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전세버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수요조사를 요청한바,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2023.06.30.(금) 오전까지 연합회 이메일(trueeye@nate.com) 및 FAX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국토교통부 공문 1부. 끝.

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회 장 오 성



담당 오찬근

과장 서기홍

차장 심윤수

협조자

시행 전세연 제2023-058호 (2023. 6. 27)

접수

()

우 28166 /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(국도푸르미르 빌딩, 7층) / www.ktbus.com

전화 02-792-2916

전송 02-794-2654

/

/공개